

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

위해식품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: 고아지벤또

나. 제조일·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: 2024. 6. 17. (제조일자)

다. 회수사유: 자가품질검사 대장균 기준치 초과

라. 회수방법: 영업자 회수 (3등급)

마. 회수영업자: 고아지(Goaji)

바. 영업자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8길 11-3, 1층 (원효로2가)

사. 연락처: 010-5697-2414

아. 그 밖의 사항: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

-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회수명령기관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위생과(☎ 02-2199-8043)